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,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(치안감 1명, 총경 1명, 총경 또는 4급 1명, 경정 4명, 경감 1명, 경위 4명, 3·4급 또는 총경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디지털정부국”을 “디지털정부국·경찰국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경찰국) ①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.

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「정부조직법」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2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
3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전 부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
4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,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징계 승인을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
5. 「지방자치법」 제184조 등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

6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

제59조제2항 후단 중 “113명”을 “114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5명(경정 4명, 경감 1명)”을 “17명(치안감 1명, 총경 2명, 경정 8명, 경감 2명, 경위 4명)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622”를 “1,63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593”을 “1,594”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다음에 “3급 또는 4급 이하(총경 포함) 1,525”를 신설하고, “3급 또는 4급 이하 1,524”를 삭제하며, 경찰공무원 계 “11”을 “23”으로 하고, 그 다음에 “치안감 1”을 신설하며, 그 다음에 “총경 또는 4급 이하 22”를 신설하고, “경정이하 11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하부조직) ①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 · 정부혁신조직실 · 디지털정부국 · 지방자치분권실 ·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 관리본부를 둔다. ② (생략) <신설>	제4조(하부조직) ① ----- ----- -- <u>디지털정부국 · 경찰국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3조의2(경찰국) ① 국장은 치 안감으로 보한다.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. 1. 「정부조직법」 제7조에 따 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· 감 독에 관한 사항 2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 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 회 위원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3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 0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 원회 안건 부의 및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

제59조(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(생략)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 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113명을 상 한으로 하고, 3급 또는 4급 공무 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 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(4급 또	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제1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,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우 및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징계 승인을 위한 경 유에 관한 사항 5. 「지방자치법」 제184조 등 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 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59조(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114명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	---

_____.

③ -----

----- 17명(치안

감 1명, 총경 2명, 경정 8명, 경

감 2명, 경위 4명)-----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(제5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622</u>	<u>1,635</u>	+1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,593</u>	<u>1,594</u>	+1
·	·	·	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 제	1		
<u>3급 또는 4급 이하(충경 포 함)</u>	<u><신 설></u>	<u>1,525</u>	+1,525
<u>3급 또는 4급 이하</u>	<u>1,524</u>	<u><삭 제></u>	
·	·	·	
·	·	·	
경찰공무원 계	<u>11</u>	<u>23</u>	+12
<u>치안감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충경 또는 4급 이하</u>	<u><신 설></u>	<u>22</u>	+22
<u>경정이하</u>	<u>11</u>	<u><삭 제></u>	-11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3